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275647 판결 [사용료 및 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2024. 9. 27.

판결 선고2024. 10. 1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은 58,191,209원 및 그중 57,703,004원에 대하여는 2024. 7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398,220원에 대하여는 2024. 7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,

나.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을 171,089,685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한웅희

별지